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부산광역시>

2023. 8. 2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목 차

1. 강 영 완 [국민의힘 부산시당 조직과장] 1
2. 김 병 규 [진보당 부산시당 정책위원장] 7
3. 도 한 영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 13
4. 박 재 욱 [신라대학교 교수] 21
5. 이 성 수 [동서대학교 교수] 29
6. 이 성 한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 37
7. 최 형 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수석대변인] ... 49
8. 홍 지 수 [기본소득당 부산시당 위원장] 59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을 위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의견서

강영완 | 국민의힘 부산시당 조직과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을 위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의견서

강영완 | 국민의힘 부산시당 조직과장

1. 서 론

- 부산시는 대한민국 항만·물류의 중심지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의 위상을 지켜왔으나 산업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에 의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이유로 부산의 선거구 정수를 기존 18석에서 17석으로 줄여, 수도권(경기·인천)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당장의 숫자 균형을 위해 현재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소멸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임.
- 부산시는 인구 감소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을 해왔고, 물류·빅데이터·창업금융·문화·관광 등 미래 먹거리를 추진 중인 상황
-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덕도신공항 건설·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국회의 역할이 필수인 사업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의석수 1석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 실제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건의 경우 현재 수도권 중심적 사고의 결과로 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나 정책들이 수도권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정체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 상황임.
- 이에, 부산시의 산적한 과제 해결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18개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절실함.

2.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1) 원칙 :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수 유지

-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현재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수 18석을 내년 총선에서도 유지하는 것이 원칙.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의석수는 121석으로, ‘수청권’의 범위로까지 확대하면 과반인 150석에 육박해 이미 국회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기관인 정부가 독립적인 것은 사실이나, 국가발전의 공공성에 있어 최소한의 목표를 위해 상호 작용해야 함.
- 지역 균형발전은 현 정부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여러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목표임.
- 그러나,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인구수의 변화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바꾸는 것은 이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것임.
- 따라서 과거와 현 정부의 공통적인 방향이자 목표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의 국회의원 선거구 정수 유지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임.**

2)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현황(※ 2023년 1월 기준)

- ▲ 상한인구수 : 271,042명 / ▲ 하한인구수 : 135,521명

선거구	인구	비고
중구영도구	147,591명	
중구	39,627명	
영도구	107,964명	
서구동구	191,385명	
서구	105,036명	
동구	86,349명	
부산진구갑	175,933명	
부산진구을	180,428명	
동래구	273,177명	2,135명 초과
남구갑	125,956명	9,565명 미달
남구을	130,234명	5,287명 미달

선거구	인구	비고
북구강서구갑	154,972명	
북구강서구을	266,669명	
	북구	123,603명
	강서구	143,066명
해운대구갑	220,283명	
해운대구을	166,006명	
사하구갑	131,021명	4,500명 미달
사하구을	170,891명	
금정구	220,567명	
연제구	203,197명	
수영구	174,911명	
사상구	203,796명	
기장군	179,090명	

3)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

○ 현행 유지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200일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선거구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여러 이유로 우려가 됨.
-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함.
- 선거구획정을 위한 **법정 기한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매년 선거에 임박해 조정을 반복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자칫 게리맨더링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부산에서 선거구 조정이 언급되는 지역은 인구 상·하한 조건에 걸려있긴 하나 현재 이 지역들은 주택재개발 등의 요인으로 인해 **차기 국회의원선거(제23대) 전에 인구수가 크게 유동적일 예정임**. 따라서 현재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 조정이 될 경우 다음 선거구획정 시에 다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치·행정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200일 남짓 남겨둔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부산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정수 18석을 사수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최선의 방안임.

3. 결 론

- **대원칙은** 전체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면, **부산의 국회의원 선거구 정수도 18석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임.
 - 수도권 의원 1석은 이미 과반에 가까워 국회의 결정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수도권 중심적인 논리에 의해 지방과 관련된 법이나 정책들이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것이 빈번한 상황임.
 - 특히 소속 상임위원회에 따라서는, 지방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의원 1석은 수도권 의원 1석과 그 중요성을 달리함.
 - 지방균형발전은 지방분권과 함께 추진되어야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지방의 의석수를 줄여 수도권 의석을 늘리는 것은 과거 및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것임.
- 선거구 조정의 경우, **조정 없이 현행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 내년 선거가 200일 남짓한 상황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정치·행정적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특히 현재 부산에서 선거구 조정 대상으로 언급되는 지역의 경우 차기 총선 전까지 큰 유동 인구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현 기준으로 조정을 할 경우 차기 총선에서 다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종합하자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에서는 정수 및 선거구의 조정 없이 **현행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며, 선거구 조정의 경우 **차기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획정 규정에 따라 **법정 기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의견서

김병규 | 진보당 부산시당 정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의견서

김병규 | 진보당 부산시당 정책위원장

1. 기존 선거구획정 과정의 문제점과 고려해야 할 원칙

- 법정시한을 넘기고 선거에 임박하여 결정되어 왔던 지난 선거구획정 과정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과 출마자들은 선거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유권자들은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음.
- 특히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여야 간 합의로 뒤집으며 특례조항을 두면서까지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오점을 남김.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경기 화성시 봉담읍 사례)
- 매 선거마다 논란이 되었던 게리맨더링 문제(부산의 경우 서구동구선거구는 산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서로 생활권이 달라 게리맨더링 논란이 있었음.)와 대표성 문제(시·도별 인구수와 의석수 간 불균형)

2. 현행 부산 선거구 현황 (획정기준 불부합 선거구는 굵게 표시)

선거구 (18개 선거구)	관할 구역	인구수 (2019.01)	인구수 (2023.01)
중구영도구선거구	중구 일원, 영도구 일원	162,399	147,591
서구동구선거구	서구 일원, 동구 일원	197,249	191,385
부산진구갑선거구	부전제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부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4동	181,528	175,933
부산진구을선거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가야제1동, 가야제2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180,037	180,428
동래구선거구	동래구 일원	266,502	273,177

선거구 (18개 선거구)	관할 구역	인구수 (2019.01)	인구수 (2023.01)
남 구 갑 선거구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동,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140,242	126,976
남 구 을 선거구	대연제1동, 대연제3동,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139,228	129,214
북구강서구갑선거구	북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2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162,513	154,972
북구강서구을선거구	북구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강서구 일원	257,694	266,669
해운대구갑선거구	우제1동, 우제2동, 우제3동, 중제1동, 중제2동,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225,162	220,283
해운대구을선거구	반여제1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184,005	166,006
사하구갑선거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140,611	131,021
사하구을선거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186,357	170,891
금정구선거구	금정구 일원	242,459	220,567
연제구선거구	연제구 일원	208,406	203,197
수영구선거구	수영구 일원	176,116	174,911
사상구선거구	사상구 일원	222,853	203,796
기장군선거구	기장군 일원	164,898	179,090

3. 선거구 획정 기준 불부합 선거구에 대한 입장

1) 인구범위 하한(135,521명)에 미달하는 선거구

- 남구갑, 남구을 선거구는 인구범위 하한에 미달하므로 통합이 필요함. 2023년 1월 말 기준 남구 인구는 256,190명으로 두 선거구를 합하더라도 인구 범위 상한을 넘지 않음.

- 사하구갑 선거구는 인구 하한 미달이지만 사하구을과 인구 편차가 크고 (사하구을 170,891명) 사하구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301,912명으로 인구 범위 상한 초과) 사하구 내에서 경계를 조정하여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2) 인구범위 상한(271,042명)을 초과하는 선거구

- 동래구 선거구는 비록 인구범위 상한을 초과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2,135명 초과) 인구범위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만약 분할한다면 동래구 갑 (수민동, 복산동, 명륜동, 안락제1동, 안락제2동, 명장제1동, 명장제2동 - 135,581명) 동래구 을 (온천제1동, 온천제2동, 온천제3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직제3동 - 137,596명) 으로 나눌 수 있겠음.

3)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제2호 불부합 선거구

- 북구강서구을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제2호(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 2023년 1월 말 기준 강서구 인구 146,066명으로 단독으로 선거구 구성 가능)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임. 강서구는 꾸준한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구성과 도시계획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전망이므로 단독선거구를 구성해야 할 것임. 다만 이 경우 북구 인구가 동래구보다 많다는 점 (2023년 1월 말 기준 북구 인구 278,575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4) 부산 지역구 의석 축소 가능성

- 국회에서 부산 전체 인구수가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결정이 있을 수 있으나, 부산 전체 의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도심(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과 사하구 총 5개 자치구를 관할하는 4개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여 3개 선거구로 축소하는 것 외에 이번 선거구획정의 인구 범위와 공직선거법 조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안은 없음. 이 경우 중구동구영도구 선거구와 서구사하구갑, 서구사하구을 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원도심 4개구와 사하구는 서로 생활권이 다르고 산과 바다, 터널이 그 경계로 되고 있어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 현지 지역 사정을 감안했을 때 숙고해야 할 방안임.

4. 결 론

- 남구갑, 남구을 선거구 통합
- 사하구갑 선거구 사하구을과 경계조정하여 유지
- 북구강서구을 선거구에서 강서구 분리하고 북구는 2개 선거구로 분할
- ①동래구를 2개 선거구로 분할하고 원도심과 사하구 선거구를 기존 4개에서 3개로 조정하거나 ②동래구 선거구를 그대로 두되 인구범위 상한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산 전체 의석수 18석 유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시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한 의견**

도한영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시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한 의견

도한영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

1.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적절성

1)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현황

- 선거구획정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일 13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해야 함.
- 늦어지는 지역선거구 획정
 - 제15대 국회의원선거부터 22대 총선까지 선거를 8번 치르는 동안 한번도 이 법을 30년 동안 지키지 않음. 국회 스스로가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있음.
 - ※ 15대 75일 전, 16대 65일 전, 17대 37일 전, 18대 48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22대 ?. 15대부터 21대까지 평균 50일 전 지역선거구 확정함.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국회의장 양치기 소년으로 둔갑. 선거제도 및 지역선거구 획정 시한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음.
 - 기성 정치인(국회의원) 기득권 놓지 않으려는 밥그릇 싸움과 의도적 미루기
 - 정치 신인 진입 장벽 높음, 후보자 잘 모르는 지역구 출마 가능성 존재,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 침해, 지역 주민에 의한 정치 불신 가속화 등 문제점 발생
- 지역 주민 의견수렴 부족
 - 전국 순회 공청회 형식 진행. 직접적 주민 목소리 수렴 부족

- 선거구 획정위원 구성. 지역 소멸 등 선거구획정에 나서는 이런 문제 해결 쉽지 않아 보임.
- 선거구획정위원회 권한 미비
 - ▶ 독립기구, 일시적 위원회(국회의원선거일 18개월 전 설치 운영), 권한 부족

2)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소멸 시대 선거구획정 기준 적절한가?

- 헌법재판소 선거구 인구 편차 2대1 규정
 -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투표 가치 증가성을 고려해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상하 33.3%로 결정함. 이후 20대 21대 국회의원선거 이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함.
 - 수도권 인구집중과 비수도권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인구 편차 더욱 심화 예상. 수도권 국회의원 수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 국회의원 수 지속적 감소 이어질 것. 비수도권 지역 정치 소외 현상 심화
 - 인구 편차에 따른 선거구획정 한계 존재 : 계속 지속할 것인지?
- 국회 지역구 의석수 현황
 - 국회 전체 지역구 의석수 253개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1개
 - 22대 국회의원선거 확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
 - ▶ 인구 상한 초과 지역구 총 18개 중 경기 12곳, 서울·인천 각 1곳 총 14곳
 - 자칫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수 중 수도권 과반 이상 차지 시간 문제일 수도 있음.
 - 수도권 중심 지역구 의석수 증가가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 지속적 증가로 이어짐. 반면 비례의석수 지속적 감소
 - ▶ 지난 17대 지역구 의석수 243석(총 299석), 21대 지역구 의석수 253석(총 300석). 10석 지역구 의석 확대, 반면 비례의석수 감소
 - ▶ 이중 지역구 시도별 의석수를 비교해 보면 경기 10석, 세종 2석, 서울·인천·충남·대전·광주 각 1석 증가. 반면 전남 3석, 경북 2석, 전북·경남 각 1석 줄어 듬.

○ 지역선거구 확정 기준 보완 필요

-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현상 해소되는 선거구획정 기준 필요함. 상하한 인구 기준 외에 지역 간 편차 반드시 고려한 기준 제시 마련

2.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

1)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기준(선거구획정위원회, 2023. 02)

○ 인구 범위(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인구비례 2:1)

- 하한인구수 : 135,521명
- 상한인구수 : 271,042명

※ 전국 253개 지자체 평균인구수(전국 인구수 ÷ 지역선거구수) 203,281명 기준 인구 편차 상하 33 $\frac{1}{3}$ %(인구비례 2:1) 적용

○ 확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현황

-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 18곳
 - ▶ 경기 12곳, 서울·부산·인천·충남·전북·경남 각 1곳
-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 11곳
 - ▶ 부산·전북 각 3곳, 경기 2곳, 인천·전남·경북 각 1곳

2) 부산지역 선거구획정 조정안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조정 예상 지역

- 인구범위 상한 초과 선거구 : 동래구
- 인구범위 하한 미달 선거구 : 남구갑, 남구을, 사하 갑
- 공직선거법 제25조 불부합 선거구 : 북구강서을

○ 인구범위 하한 미달 선거구

- 남구갑, 남구을 : 남구 합구를 통한 단일 선거구 조정

- 사하갑은 사하읍과 조정을 통한 선거구 조정
 - ▶ 교통, 지역구 간 인구편차, 지리 등 고려하여 사하읍의 ‘신평 2동’ 을 사하갑으로 조정

○ 강서구 단독 선거구

- 강서구 인구 증가로 지역구 인구 하한선 초과로 단독 선거구 구성

○ 북구갑 · 북구을 분구

- 제21대 북구강서구 선거구

북구강서구갑	북구 구포 제1동, 구포 제2동, 구포 제3동, 덕천 제1동, 덕천 제2동, 덕천 제3동, 만덕 제1동, 만덕 제2동, 만덕 제3동
북구강서구을	북구 금곡동, 화명 제1동, 화명 제2동, 화명 제3동, 강서구 일원

- 제22대 북구갑 · 북구을 선거구 조정안

북구갑	북구 구포 제1동, 구포 제2동, 구포 제3동, 덕천 제1동, 덕천 제3동, 만덕 제1동, 만덕 제2동, 만덕 제3동
북구을	북구 금곡동, 화명 제1동, 화명 제2동, 화명 제3동, 덕천 제2동

- ▶ 강서구가 단독 선거구가 되면 기존 북구갑과 북구을로 분구 조정
- ▶ 지리, 생활문화, 교통, 정서 등 고려하여 기존 지역구를 기본으로 적용함. 하지만 화명동과 금곡동 인구(2023년 1월)는 선거구 하한 미만임
- ▶ 북구을 지역구에서 교통, 지리, 생활문화 등 고려하여 ‘덕천 2동’ 을 북구갑으로 편입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임. 덕천 1동은 화명 1동과 산으로 경계가 형성되어 있고, 덕천 3동은 만덕대로 건너편에 위치하여 화명 1동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음.

○ 동래구

- 현행 유지

3) 제안

-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시대,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 맞는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확대, 지역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
 - 국회의원 의석수 증대, 비례의석수 확대
 - 현실성 있는 방안 찾기, 정치권에 맡겨둬 선 안됨

- 부산지역 선거구획정 조정
 - 남구갑·남구을 합구로 조정
 - 사하갑은 사하을과 조정을 통한 선거구 조정
 - 강서구 단독 선거구
 - 북구는 북구갑·북구을로 분구 : 북구을 ‘덕천 제2동’ 을 북구갑으로 조정
 - 동래구 현행 유지
 - 부산지역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 18석 유지

- 제도 보완
 -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권한 강화 : 정치권 영향 최소화
 - 지역 주민 의견수렴 과정 확대 : 공청회 외 설문 조사 등 진행

3. 기 타

- 1) 선거제도 개혁(선거법 개정) 선행
 - 빠른 시일 내 선거법 개정 진행
 - 내용
 - ▶ 비례성 확대되는 선거제도 개혁
 - ▶ 위성정당 방지
 - ▶ 국민 참여 방식의 선거제도 확정

2) 정치 국민 신뢰 회복 찾기

- 선거제도와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 불신 해소 방안 제시 필요. 이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 기대
 - 정치가 국민 신뢰를 잃어버리면 대한민국 정치 지속적 후퇴. 이번 22대 총선 선거제도 및 선거구획정 과정 국민 신뢰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선거구획정을 위한 지역 의견(부산)

박재욱 | 신라대학교 교수

선거구획정을 위한 지역 의견(부산)

박재욱 | 신라대학교 교수

동래구

인구변동	동래구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272,261명
2020년 12월 말	270,745명
2021년 6월 말	268,391명
2021년 12월 말	266,866명
2022년 6월 말	274,491명
2022년 12월 말	273,226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기준일)	273,177명

현황과 쟁점

- 동래구는 상한인구수 271,042명을 약 2,000명 초과하는 273,177명에 달하기 때문에 분구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최근 사직동과 온천동 중심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20~21년 사이 2,000~6,000명 정도 인구 감소 현상을 보이다 최근 21대 총선 당시의 인구 규모로 회복 중
- 다만, 인구수 27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상한선 초과를 근거로 선거구 분할 요구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럴 경우 전국적으로 지역구 수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음 (서울 1, 부산 1, 인천 1, 경기 12, 충남 1, 전북 1, 경남 1 등 전국 18개 선거구)

의견

- 현행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이 유지된다면 현재와 같이 분구 없이 현상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봄
- 현존 동래구 선거구 존치 의견

남구갑/ 남구을

인구변동	남 구		
	구 전체 인구	갑	을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272,529명	137,714명	134,815명
2020년 12월 말	267,731명	134,996명	132,735명
2021년 6월 말	264,098명	133,163명	130,935명
2021년 12월 말	262,069명	131,645명	130,424명
2022년 6월 말	259,735명	130,391명	129,344명
2022년 12월 말	256,333명	127,462명	128,871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기준일)	256,190명	126,976명	129,214명

현황과 쟁점

- 남구는 소선거구제가 실시된 13대 총선 이후 16대 총선을 제외하고 갑/을 선거구를 유지
- 인구가 29만 명이 붕괴되기 이전이었던 19대 총선부터 선거구 합구 논의가 계속 지속
- 21대 총선 당시에도 남구갑 137,714명, 남구을 134,815명으로 하한선 135,521명에 근접
- 23년 현재 남구갑 126,976명, 남구을 129,214명으로 각각 하한선 135,521명에 크게 미달
- 남구갑과 남구을 모두 합해도 256,190명으로 상한인구수 271,042명에도 미달(△14,852)

의견

-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남구 갑/을 모두 합해도 동래구 인구수 273,177명보다도 적기 때문에 남구는 합구가 타당함
- 남구갑/남구을 합구의견

사하구갑

인구변동	사하구		
	구 전체 인구	갑	을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319,026명	136,527명	182,499명
2020년 12월 말	311,757명	133,284명	178,473명
2021년 6월 말	307,559명	132,425명	175,134명
2021년 12월 말	306,003명	131,733명	174,270명
2022년 6월 말	305,008명	131,446명	173,562명
2022년 12월 말	301,987명	130,664명	171,323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기준일)	301,912명	131,021명	170,891명

중구·영도구/ 서구·동구

인구변동	중구·영도구			서구·동구		
	중구	영도구	선거구 전체	서구	동구	선거구 전체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41,789명	115,965명	157,754명	107,699명	89,141명	196,840명
2020년 12월 말	41,523명	113,342명	154,865명	108,135명	88,901명	197,036명
2021년 6월 말	40,561명	111,685명	152,246명	106,422명	87,916명	194,338명
2021년 12월 말	40,524명	110,638명	151,162명	105,164명	87,679명	192,843명
2022년 6월 말	40,455명	109,395명	149,850명	104,340명	88,087명	192,427명
2022년 12월 말	39,689명	108,156명	147,845명	105,192명	86,462명	191,654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기준일)	39,627명	107,964명	147,591명	105,036명	86,349명	191,385명

사하구갑

현황과 쟁점

- 23년 1월 말 현재 사하구갑 인구수 131,021명으로 하한인구수(135,521명)에 4,500명 미달
- 21대 총선 이후로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6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사상-하단선개통 이후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등 사하구를 (170,891명)과 자체 동간 조정을 통한 선거구 조정 가능
- 사하구갑 선거구를 인접한 기존 ‘서구·동구’ 선거구를 조정하여 ‘서구·사하구 갑/을’ 로 조정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러한 조정 방식은 ‘자치구 분할 금지 원칙’ 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생활권, 역사성을 감안해도 서구는 중구·영도구와 더욱 밀접함. 또한 서구를 분구 시킬 경우, 같은 선거구인 동구의 경우 9만도 안 되는 인구이므로 인접 선거구에 붙이기도 곤란

의견

- 사하구 갑/을 선거구 내 동간 인구 조정을 통해 기존 사하구갑 선거구 존치 의견
- 중구·영도구/ 서구·동구선거구의 경우, 인구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 하한선에 들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존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중 (26년 개통예정)

사상~하단선은 서부산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과 1호선 하단역 6.9km (전체 5공구) 구간에 7개 무인경전철 정거장과 1개 차량기지 건설 사업



북구강서구을

인구변동	북구·강서구				
	갑	을	편차	북구 인구	강서구 인구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2022년 3월 24일)	159,656명	261,083명	101,427명	289,765명	130,974명
2020년 12월 말	156,544명	265,365명	108,821명	283,952명	137,957명
20121년 6월 말	156,517명	267,815명	111,298명	283,612명	140,720명
2021년 12월 말	156,782명	269,347명	112,565명	283,211명	142,918명
2022년 6월 말	155,676명	268,882명	113,206명	280,511명	144,047명
2022년 12월 말	155,110명	266,954명	111,844명	278,857명	143,207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기준일)	154,972명	266,669명	111,697명	278,575명	143,066명

현황과 쟁점

- 북구와 강서구 지역의 북구·강서구을은 2020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제25조 제1항 2호 규정에 근거
 - 과거에는 특례선거구로 ‘부칙’에 규정되어 있었음. 이 선거구는 지난 15대 총선 이후 현재까지 존속
- 지난 제14대 총선에서만 유일하게 강서구 단독 선거구 구성
 - 당시 북구는 사상구 지역까지 포함해 갑/을로 나누어졌다가 1995년에 사상구가 분리된 이후 인구 미달 선거구인 강서구와 재조정하면서 15대에 강서구와 덕천2동을, 16대 이후로는 두 지역에 화명동과 금곡동을 묶어서 ‘북구·강서구 을’로 조정

- 급격한 인구 편차와 교통권/생활권의 분리
 - 이후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줄고 있는 갑 선거구에 비해 을 선거구는 북구의 화명신도시, 강서구의 명지국제신도시가 건설되고 입주민이 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 20대 총선 당시에는 170,745명 vs 240,189명으로 그 편차가 69,444명, 21대 총선 당시에는 159,656명 vs 261,083명으로 그 편차가 101,427명까지 더욱 확대되고 23년 현재 111,697명에 이룸
 - ‘북구·강서구 을’의 경우, 강서구와 북구 화명·금곡지역으로 가려면 갑 선거구나 김해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 재조정 필요

의견

- 강서구의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143,066명으로 하한인구수 135,521명을 넘어선 만큼 강서구는 단독으로 분구하여 선거구 구성
 - 강서구는 현재 명지국제신도시 뿐만 아니라 에코델타시티 역시 추진 중이므로 잠재적으로 인구가 향후에도 증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큼
- 나머지 북구는 지역구 상/하한선의 조정 여부에 따라 단일 선거구나 갑/을 분구로 조정. 만약 북구가 갑/을 분구가 된다면, 기존 갑 선거구 내 덕천동의 일부를 을 선거구로 배치
 - 북구는 인구수 278,585명으로 단독 선거구일 경우, 상한인구수 271,042명에서 약 7천5백여명 초과하고, 갑/을로 분구할 경우에도 중간값 139,292명으로 하한선 135,521명을 넘어섬
- 현 '북구·강서구 갑/을'의 재조정할 경우 : 현행 선거구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되, 강서구와 함께 생활권이 가까운 북구 구포동을 한 선거구로 묶고, 다른 북구 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는 것으로 지역 내 조정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법하므로 법률적 특례가 필요

2024년 22대 총선
선거구획정 관련
부산지역 현안

이성수 | 동서대학교 교수

2024년 22대 총선 선거구획정 관련 부산지역 현안

이성수 | 동서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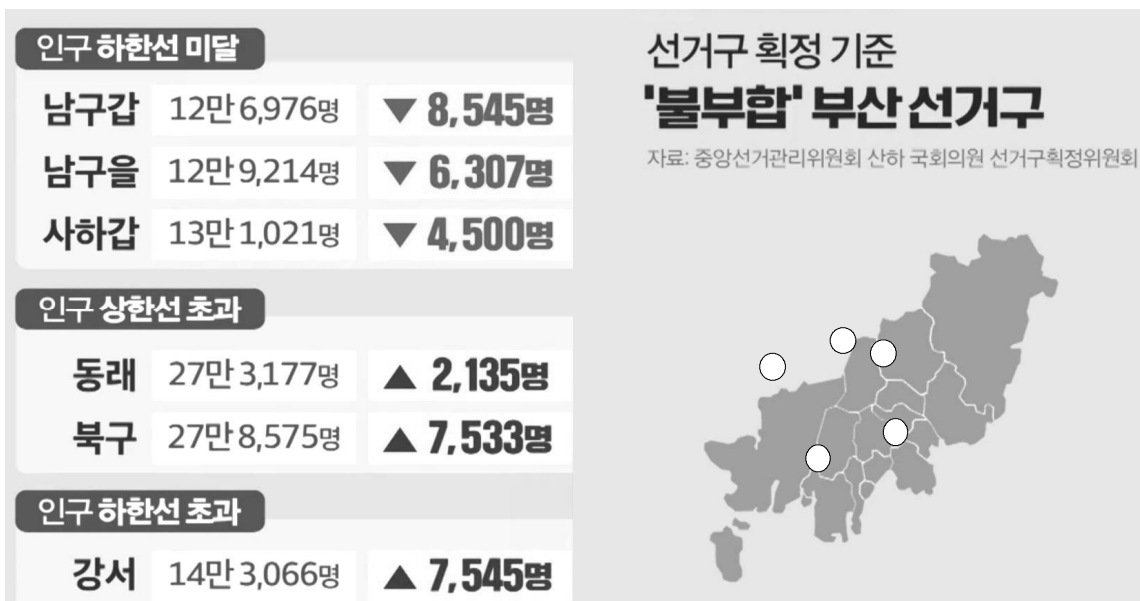
1. 현행 부산광역시 선거구와 인구 상한 혹은 미달 지역

- 22대 국회의 상한 기준선을 27만 1,042명으로 본다는 확정위의 결론이 2023년 2월에 발표되면서 이 기준으로 지역구를 분구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하한선 : 135,521명
- 2분할(상한선) : 271,042명

→ 2023년 2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 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

→ 전국적으로 상한(271,042명)을 넘는 선거구가 18곳

→ 하한(135,521명)에 미달한 선거구가 11곳



<자료출처: 부산 KBS 캡처>

<부산 기준 미충족 선거구 5곳>

하한미달	남구갑	126,976 (-8,545)	○ (인구수) 남구 256,190명(갑·을)
	남구을	129,214 (-6,307)	
	사하구갑	131,021 (-4,500)	○ (인구수) 사하구 301,912명(갑·을)
분할 금지	북구 강서구을	266,669	○ (인구수) 북구 278,575명 강서구 143,066명(인구범위 충족) ※ 강서구 인구범위 충족으로 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적용 불가
상한초과	동래구	273,177 (+2,135)	○ (인구수) 동래구 273,177명



- 동래구 1석에서 → 2석 가능
- 북강서구(갑, 을) → 북구 2개, 강서구 1개로 선거구 분할 가능
- 부산 남구 갑, 을 선거구 합구
 - 현직 의원 여1(박수영), 야1 (박재호) 맞대결
- 부산정치권은 18개 선거수 유지하는 게 목표

2. 부산광역시 조건 미달 선거구의 현황과 여론 분석

첫째, 남구의 경우

- 남구는 소선거구제가 실시된 13대 총선 이후 16대 총선을 제외하고 갑/을 선거구를 유지해 왔음.
- 인구가 29만 명이 붕괴되기 전이던 19대 총선부터 선거구 합구 논의 → 항상 합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21대 총선에 앞서 구 전체를 수정하여 남구갑, 남구을 선거구를 유지했지만,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부터 두 선거구 모두 하한선 미달
- 남구는 재개발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
-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이 조정되지 않는 한 남구는 사실상 합구가 확정적인 상황

<남구의 여론 흐름>

- 남구는 갑, 을 지역 모두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많은 관계로 상대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지역
- 용호동 내에서의 지역 편차, 대연동 내에서의 지역편차가 존재함.
- 인구 감소로 부산은 전 지역이 ‘노인과 바다’ 라는 자조적 표현이 많음.
- 이에 따라 하한선 조정을 필요로 하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남구의 경우 갑, 을이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다수

인구변동	남구		
	구 전체 인구	갑	을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272,529명	137,714명	134,815명
2020년 12월 말	267,731명	134,996명	132,735명
2021년 6월 말	264,098명	133,163명	130,935명
2021년 12월 말	262,069명	131,645명	130,424명
2022년 6월 말	259,735명	130,391명	129,344명
2022년 12월 말	256,333명	127,462명	128,871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기준일)	256,190명	126,976명	129,214명

둘째, 동래구의 경우

- 동래구는 시간이 갈수록 행정구 분리를 겪으면서 그 영역이 축소
-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금의 금정구를 동래구에서 떼어내 신설
- 동래구 지역을 동래구 갑, 지금의 연제구 지역을 동래구 을로 편성
- 1995년 3월에 연산동과 거제동을 동래구에서 떼어내 연제구를 신설하면서 선거구가 다시 조정되었음
- 동래구의 동 중에서 수민동, 복산동, 명륜동, 안락동, 명장동을 동래구 갑으로 온천동과 사직동을 <동래구 을>로 편성
-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높고 중장년 인구가 많아 보수 성향이 강함
- but 사직동엔 3040대 인구가 많아서 해당 지역에선 진보세가 강한 편
- 20대 총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이진복이 불과 42.5%밖에 안 되는 득표율로 당선
- 19대 대선에서는 이곳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 자유한국당 홍준표를 상대로 37.7% : 33%로 4.7%p 차이로 꺾고 1위를 차지 민주당 바람
- 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20대 총선 때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동래구청장에 당선
-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김희곤 후보가 당선,
But 민주당 후보 박성현도 42.5%를 얻으면서 보수-진보의 양구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동래구 여론 흐름>

- 현행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이 조정되지 않는 한 분구 없이 현상 유지도 가능
-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이 조정된다면 분구가 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경우도 인구 증가로 인한 분구를 원하는 입장이 다수
- 여야에 따라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으나 여론은 분구에 대한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동래구의 갑/을 분구는 여야 모두 원할 것으로 보여짐.

- ‘부산 북구·강서구 을’은 강서구의 인구 증가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대상이 되면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2023. 1. 31 행안부 주민등록 통계)

셋째, 사하구 갑의 경우

사하구는 단일 선거구에서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사하구의 인구가 상한선을 초과

→ 사하구 갑, 을 선거구로 나누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사하구의 경우 갑을 선거구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유리함

→ 이 경우 여당, 야당 모두 만족할 것으로 사료 됨

3. 부산지역 언론 분석

→ 부산에서 동래구와 북구 2곳을 모두 의석수를 증가 가능성의 여부

→ 부산 전체 의석이 18석에서 19석으로 늘게 됨

→ 부산 정치권에서는 ‘부칙’ 을 통해 현상 유지하는 방법, 혹은 인접구와 동 조정을 하는 방안 등이 거론

→ 이 경우 부산은 남구 합구로 1석이 줄어 17석으로 쪼그라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 18석 유지를 위해선 한 곳만 늘려야 함.

→ 전체적으로 동래구는 여당에, 북구는 야당에 유리한 지역구로 인식

→ 여야 합의가 쉽지 않고 형평성 논란

→ 사하갑의 경우 사하을과 동 조정을 통해 불부합 상황을 해소 가능

→ 신평동을 사하갑으로 떼오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분석

〈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부산광역시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정의당 부산시당 의견**

이성한 ■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부산광역시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정의당 부산시당 의견

이성한 |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

1. 들어가며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치를지 아직도 국회가 결정하지도 않고 있는 직무 유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지역별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과 반문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혹시 오늘 선거구획정(안) 의견청취가 21대 국회의원선거처럼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총선을 불과 35일 남겨놓은 시점에서야 선거구를 확정하면서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선거운동을 하던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획정 이후 선거사무소를 이전하는 웃지 못할 한 장면으로 남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걱정도 된다.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이 같은 의문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에서 선거제도를 결정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를 확정 한 후에야 지역별 의원정수 조정과 선거구획정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은지 지역별 의견청취가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21대 국회의 계속된 직무 유기로 인한 선거구획정의 불안정성은 결국 유권자의 참정권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함에도 국회는 어떤 법적 처분이나 구속도 받지 않고 있다. 선거구획정(안) 의견청취를 듣는 지금도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더불어 국회의 선거제도 및 선거구획정에 대한 직무유기와 법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촉구한다.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과정의 문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감축한 이후 2016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명문 규정이 되었다. 그러나 인구비례 2:1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와 누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백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부산은 전국 인구비율에 따른 적정 의석수에서 과다 대표 되고 있는 지역임에도 의석수 조정 없이 단순히 남구갑·을 선거구의 인구하한 문제를 경계조정을 통해서만 선거구를 획정하였다.

또한 2015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선거구획정은 국회 주요 정당의 합의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인구비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입법과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구획정 법정시한 준수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며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3. 22대 국회의원선거 부산광역시 선거구획정의 문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2호 인구비례 2:1에 근거해서 발표한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8,000명, 하한 인구수는 139,000명이었다. 실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2020년 3월 24일) 인구비율은 2.28:1이었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 선거일 15개월 전인 2023년 1월 31일 주민등록표 인구에 근거해서 올해 2월에 발표한 선거구 상한인구수는 271,042명, 하한인구수는 135,521명이며 평균인구수는 203,281명이다.

21대 국회의원선거 부산광역시 선거구 및 인구수

선거구	관할구역(선거구역)		2019.1.31 기준 인구수	2023.1.31. 기준 인구수	
중구 영도구	중앙동, 동광동, 대청동, 보수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1동, 영주2동,	42,665	162,399	39,627	147,591
	남항동, 영선1동, 영선2동, 신선동, 봉래1동, 봉래2동, 청학1동, 청학2동, 동삼1동, 동삼2동, 동삼3동	119,734		107,964	
서구동구	동대신1동, 동대신2동, 동대신3동, 서대신1동, 서대신2동, 서대신3동, 서대신4동, 부민동, 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1동, 남부민2동, 압남동,	110,421	197,249	105,036	191,385
	초량1동, 초량2동, 초량3동, 초량6동, 수정1동, 수정2동, 수정4동, 수정5동, 좌천동, 범일1동, 범일2동, 범일5동	86,828		86,349	
부산진구갑	부전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1동, 양정2동, 부암1동, 부암3동, 당감1동, 당감2동, 당감4동		181,528		175,933
부산진구을	부전2동, 전포1동, 전포2동, 가야1동, 가야2동, 개금1동, 개금2동, 개금3동, 범천1동, 범천2동		180,037		180,428
동래구	수민동, 복산동, 명륜동, 온천1동, 온천2동, 온천3동, 사직1동, 사직2동, 사직3동, 안락1동, 안락2동, 명장1동, 명장2동 대연4동, 대연5동, 대연6동, 용당동,		266,502		273,177
남구갑	감만1동, 감만2동, 우암동, 문현1동, 문현2동, 문현3동, 문현4동		140,242		126,976
남구을	대연1동, 대연3동, 용호1동, 용호2동, 용호3동, 용호4동		139,228		129,214
북구강서구 갑	구포1동, 구포2동, 구포3동, 덕천1동, 덕천2동, 덕천3동, 만덕1동, 만덕2동, 만덕3동		162,513		154,972

선거구	관할구역(선거구역)		2019.1.31 기준 인구수	2023.1.31. 기준 인구수	
북구강서구 을	북구 금곡동,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	133,779	257,694	123,603	266,669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명지1동, 명지2동, 가락동, 녹산동, 가덕도동	123,915		143,066	
해운대구갑	우1동, 우2동, 우3동, 중1동, 중2동, 좌1동, 좌2동, 좌3동, 좌4동, 송정동		225,162	220,283	
해운대구을	반여1동, 반여2동, 반여3동, 반여4동, 반송1동, 반송2동, 재송1동, 재송2동 괴정1동, 괴정2동, 괴정3동, 괴정4동, 당리동, 하단1동, 하단2동		184,005	166,006	
사하구갑	신평1동, 신평2동, 장림1동, 장림2동, 다대1동, 다대2동, 구평동, 감천1동, 감천2동		140,611	131,021	
사하구을	서1동, 서2동, 서3동, 금사회동동, 부곡1동, 부곡2동, 부곡3동, 부곡4동, 장전1동, 장전2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남산동, 구서1동, 구서2동, 금성동		186,357	170,891	
금정구	거제1동, 거제2동, 거제3동, 거제4동, 연산1동, 연산2동, 연산3동, 연산4동, 연산5동, 연산6동, 연산8동, 연산9동 남천1동, 남천2동, 수영동, 망미1동, 망미2동, 광안1동, 광안2동, 광안3동, 광안4동, 민락동		242,459	220,567	
연제구	삼락동, 모라1동, 모라3동, 덕포1동, 덕포2동, 괘법동, 감전동, 주례1동, 주례2동, 주례3동, 학장동, 엄궁동		208,406	203,197	
수영구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일광면, 철마면		176,116	174,911	
사상구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일광면, 철마면		222,853	203,796	
기장군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일광면, 철마면		164,898	179,090	

이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의 18개 선거구 중 5개의 선거구는 불부합선거구에 해당하게 된다. 동래구는 인구 상한초과에 남구갑·을과 사하구갑은 인구 하한미달에 해당한다.

북강서을 선거구는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 2호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분할 금지 원칙에 해당되는 선거구가 아니었다.(2019년

강서구 인구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인구 하한미달에 해당됨) 그러나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강서구 인구의 증가로 인구 하한에 해당이 안 되어 하나의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에 해당된다.

인구 하한미달에 해당하는 남구갑·을과 사하구갑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인구 상한초과에 해당하는 동래구와 북강서를 그리고 북구갑 선거구의 경우에는 분구 및 통합 여부에 따라서 부산지역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문제와 연동되어 문제의 해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는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백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전국 인구비례 구성에 의한 과다 대표 되고 있는 광역단체에 해당한다. 아래와 같이 부산은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 인구수 변동추이(2014년 6월 지방선거~2022년 6월 지방선거까지)

제6회 지방선거 (2014.06.0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6.04.13.)	제19대 대통령선거 (2017.05.09.)	제7회 지방선거 (2018.06.1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04.15.)	제20대 대통령선거 (2022.03.09.)	제8회 지방선거 (2022.6.1.)
3,537,635	3,524,973	3,495,478	3,479,963	3,426,749	3,367,334	3,353,340

그렇다면 현재의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18석 정수를 17석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9석으로 의원 정수를 늘이자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와 부산발전을 위해서도 과연 합리적이고 적합한 주장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4. 22대 국회의원선거 부산광역시 불부합 선거구획정 지역의 문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월에 발표한 획정 기준 불부합 22대 국회의원선거 부산광역시 5개 선거구의 최근 5년간의 인구변동 추이를 살펴보자.

< 5개 선거구 인구변동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단위 : 명)

선거구/ 행정구역	구분	2019년 1월31일	2020년 1월31일	2021년 1월31일	2022년 1월31일	2023년 1월31일
동래구	인구상한 초과	266,502	271,562	270,695	270,338	273,177 (+2,135)
남구	인구하한 미달	279,470	273,707	270,695	261,209	256,190 (남구갑 △8,545 남구을 △6,307)
사하구	인구하한 미달	326,968	320,254	311,052	305,922	301,912 (사하구갑 △4,500)
북구	인구상한 초과	296,292	290,908	283,452	282,535	278,575 (+7,533)
강서구	자치구 일부 분할 금지	123,915	130,298	138,610	143,098	143,066 (+7545)

선거구획정위 획정 기준 불부합 5개 선거구 중 부산에서는 동래구가 유일하게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이다. 5년간 인구변동에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면서 2023년 1월에는 인구상한 기준보다 2,135명 초과된 인구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가 발표한 전국의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 18곳 중 인구 편차가 세 번째(용인시을 +284명, 고양시정 +470명 다음으로)로 작은 선거구이다. 또한 갑·을로 분구시 두 개의 선거구 모두 인구하한 기준에 근접한 최소 인구수 선거구가 된다.

따라서 동래구의 경우 비록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에 해당은 되지만 분구를 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인구하한 미달 선거구인 남구갑·을 두 선거구는 통합을 하더라도 인구상한과는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 통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하구갑 역시 인구하한 미달 선거구이나 사하구을 선거구와의 경계조정을 통해서 선거구 조정이 가능한 선거구로 보인다.

강서구는 5년간 부산에서 유일하게 기장군과 함께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자치구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될 정도로 인구수가 증가되고 있어 독립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이 적법한 조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강서구를 독립 선거구로 분할시 복구에는 통합에 따른 분구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현행 갑·을 선거구를 복구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시에는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에 해당되어 분구조정 문제와 분구 시 경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나 분구에 대한 선거구 획정에 있어 앞에서 살펴본 복구의 5년간 인구변동 추이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복구의 경우 계속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이기 때문이다.

5. 나아가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53석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60석으로 늘리는 안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오늘 이 자리의 선거구획정(안) 의견청취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국회는 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7월 입법시한을 넘겨버리고 입법 공백을 초래하고 있으며 엄밀히 말하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 위반에 불구하고 정당을 막론하고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초법적 지위를 계속 누리고 있다. 주정차 위반이나 교통위반에도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받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 국민과는 너무 상반되는 특권이 아닐 수가 없다.

처음 시작하면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부한 것처럼 국회가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선거제도와 선거구를 획정할 때 비로소 공직선거법의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제대로 지킬 수 있으며 유권자의 참정권 역시 침해받지 않고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끝으로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 없이 유권자의 표의 증가성과 비례성 그리고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와 선거구획정의 해법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와 선거구획정(안)을 먼저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를 압박하는 것이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좀 더 나은 선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별첨자료] 2023년 1월 말 기준 부산광역시 선거구별 인구수 세분화

선거구	인구수		제안
중구영도구	중구	39,627	147,591
	영도구	107,964	
서구동구	서구	105,036	191,385
	동구	86,349	
부산진구갑			175,933
부산진구을			180,428
동래구	온천1동	22,521	137,596
	온천2동	24,391	
	온천3동	37,693	
	사직1동	10,319	
	사직2동	25,538	
	사직3동	17,134	
	명륜동	26,403	135,581
	수민동	31,592	
	복산동	8,948	
	안락1동	14,088	
	안락2동	26,394	
	명장1동	13,802	
	명장2동	14,354	
	남구갑	126,976	
남구을	129,214		
북구강서구갑	구포1동	15,938	154,972
	구포2동	24,495	
	구포3동	18,999	

선거구	인구수		제안
	덕천1동	11,748	
	덕천2동	11,569	
	덕천3동	10,399	
	만덕1동	16,623	
	만덕2동	27,023	
	만덕3동	18,178	
북구강서구을	금곡동	36,712	123,603
	화명1동	40,522	
	화명2동	17,480	
	화명3동	28,889	
	강서구	143,066	266,669
해운대구갑			220,283
해운대구을			166,006
사하구갑	괴정1동	18,716	131,021
	괴정2동	15,431	
	괴정3동	11,990	
	괴정4동	12,600	
	당리동	25,517	
	하단1동	21,589	
	하단2동	25,178	
사하구을	신평1동	16,244	170,891
	신평2동	17,535	
	장림1동	10,438	
	장림2동	26,593	
	다대1동	37,589	
	다대2동	26,344	
	구평동	12,763	
	감천1동	17,767	
	감천2동	5,618	
금정구			220,567
연제구			203,197
수영구			174,911
사상구			203,796
기장군			170,09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최형욱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수석대변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최형욱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수석대변인

1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 부산 이슈

선거구획정 개요

- 인구기준일: 2023. 1. 31.
- 지역선거구수: 253개
- 인구범위: 하한인구수 135,521명, 상한인구수 271,042명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

시·도	정수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수		
		인구범위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상한 초과	하한 미달	
부 산 광 역 시	18	1	3	1

- 인구범위 상한 초과 선거구
 - ▶ 북구(강서구와 분할될 경우), 동래구
- 인구범위 하한 미달 선거구
 - ▶ 남구갑, 남구을, 사하구갑
-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제2호 불부합 선거구 현황
 - ▶ 북구강서구을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세부 내역

구분	시	선거구	인구수 (편차)	비 고
상한 초과	부산	동래구	273,177 (+2,135)	○ (인구수) 동래구 273,177명
하한 미달	부산	남구갑	126,976 (△8,545)	○ (인구수) 남구 256,190명(갑을)
하한 미달	부산	남구을	129,214 (△6,307)	
하한 미달	부산	사하구갑	131,021 (△4,500)	○ (인구수) 사하구 301,912명(갑을)
분할 금지	부산	북구 강서구을	266,669	○ (인구수) 북구 278,575명 강서구 143,066명(인구범위 충족) ※ 강서구 인구범위 충족으로 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적용 불가

2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 제안

원칙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은 인구비례, 지리적인 요건을 고려해야 함.
- 그러나, 인구비례로만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의석수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동시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야 함.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 제안

○ 분할금지지역 : 북구강서구을

- ▶ 부산 북구강서구갑과 북구강서구을 지역은 강서구의 인구미달로 북구와 선거구를 분할하고 있음.
- ▶ 강서구는 신도시 등 계속되는 인구 유입으로 2023. 1. 31. 기준 선거구 확정 인구범위 충족(143,066명)으로 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적용 불가
- ▶ 인구수와 지리적 여건 등 모두를 고려했을 때 북구와 강서구로 선거구 분할 필요

※ 2020년 이후 강서구의 인구변화



※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2016.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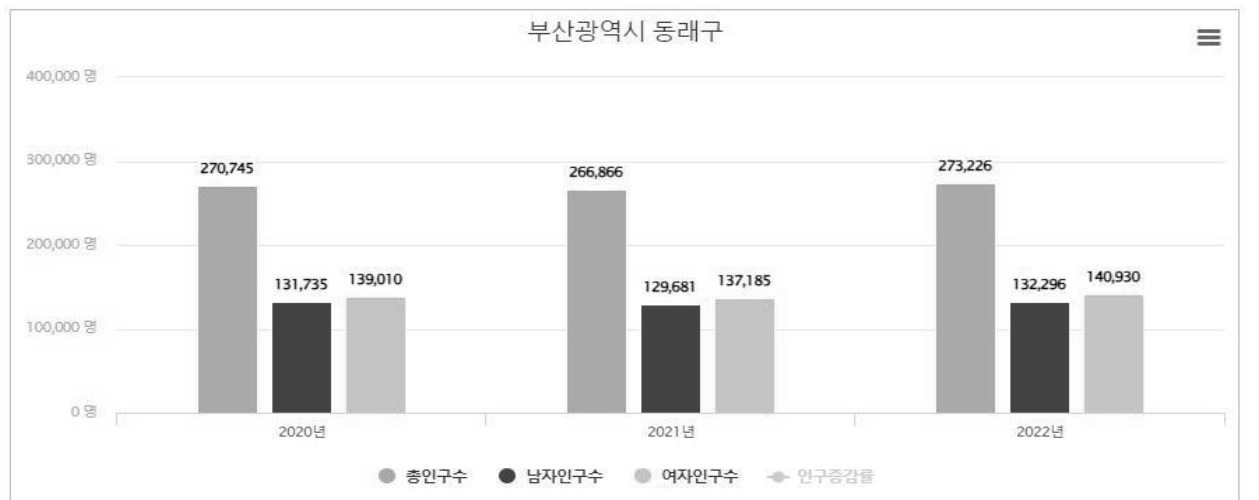
1. <생략>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 상한초과지역 - 동래구

- ▶ 동래구는 2020년 이후,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인구수가 증가함. 2023. 1. 31 기준 동래구 인구수 273,177명으로 선거구획정 기준 인구수 상한을 초과하여 동래구갑, 동래구을로 분구가 필요함.
- ▶ 온천천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좌우로 나누어진 상황을 고려하면 온천천에서 서쪽편인 사직 1·2·3동과 온천 1·2·3동을 지역구로 하고, 온천천 동편인 명륜동, 수민동, 복산동, 안락1·2동, 명장1·2동을 지역구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짐.
- ▶ 위 내용으로 분구가 될 경우 사직동과 온천동 인구는 137,596명, 명륜동, 수민동, 복산동, 안락동, 명장동 인구는 135,581명으로 두 지역 모두 인구수를 충족하는 상황임.

※ 2020년 이후 동래구의 인구변화



※ 동래구 행정구역



○ 상한초과지역 - 북구 : 분할

- ▶ 북구가 단일 선거구가 될 경우, 북구 인구수 278,575명으로 동래구보다 인구수가 더 많으므로 북구갑, 북구을로 분구가 필요함.
- ▶ 다만 이 경우, 인구 상하한 기준 충족을 위해 일부 동(洞)의 분할이 필요할 수 있음.
- ▶ 따라서 북구갑, 북구을로 분할될 경우 인구수와 행정적인 요건, 지리적인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

※ 북구와 동래구 인구비교



○ 하한미달지역 - 남구

- ▶ 남구지역의 인구감소는 자연적인 원인이 아닌 주택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 현상
- ▶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되면 남구지역 전체 인구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 남구지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갑지역과 을지역이 조정되는 등 선거구의 변동이 계속되고 있어 해당 선거구민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 ▶ 2024년 선거 이후, 인구유입이 계속되어 인구상한이 또다시 초과될 경우 이후 선거에서 선거구 조정이 반복될 것임.

※ 부산 주택정비사업 자치구별 현황



자치구별

투명한 정비사업 정보제공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갑니다



🏠 정보공개 ⏴ 정보공개 통계 ⏴ 자치구별 ⏴

공개자료 총건수 121319건

[2023.08.05 기준]

순위	조합명	사업정수	월별자금 입출금 내역 공개건수
1위	부산진구	33	22,980건
2위	남구	28	22,308건
3위	수영구	21	10,519건
4위	북구	16	10,040건

○ 하한미달지역 - 사하구갑 : 경계조정으로 하한 해소

- ▶ 사하갑은 인구기준일 2023. 1. 31 현재 하한인구수 기준 135,521명보다 4,500명이 미달하는 131,021명으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함.
- ▶ 현재 사하갑과 사하을의 동수는 사하갑이 7개 동이고 사하을은 9개 동으로 사하을에서 사하갑으로 신평2동을 조정하면 동수가 각각 8개로 균형을 이룸.
 - 사하구갑: 괴정1·2·3·4동, 당리동, 하단1·2동,
 - 사하구을: 신평1·2동, 장림 1·2동, 다대 1·2동, 구평동, 감천1·2동
- ▶ 감천1·2동은 사하갑 행정구역들과 생활문화권, 경제권, 교통권이 사실상 분리되어있고, 특히 감천2동은 괴정동과 산을 사이에 두고 지리적으로 분절되어 있음.
- ▶ 감천1동이 편입될 경우, 감천2동이 지리적으로 고립됨. 또한 감천2동의 인구수는 5,618명에 불과해 사하갑 선거구에 편입해도 또다시 선거구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 유권자들에게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 또한 사하구갑·을 지역 간의 인구편차에서도, 사하구갑 131,021명 사하구을 170,891명과 비교하면 약 4만 명의 인구격차가 존재함.

- ▶ 신평2동이 사하갑으로 편입될 경우, 사하갑을의 인구편차가 39,870명에서 4,800명으로 감소해 인구수의 균형을 이루고 인구 하한에 따른 선거구 조정 문제도 해소될 것임.
 - (기존) 갑 131,021명 : 을 170,891명 ⇒ (편입시) 갑 148,556명 : 을 153,356명
- ▶ 따라서, 하단1동과 연결되어 있고 생활문화권, 경제권, 교통권, 교육권역도 중복되는 여러 상황으로 보아 신평2동을 사하갑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 행정구역의 선거구 편입·조정보다 효율적임.

※ 신평2동의 편입 조정 근거

- (동일 생활문화권) 신평2동은 하단1동과 인접한 행정동으로 경제권, 교통이용권, 종교구획, 학교배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생활권이 겹침
- (동일 경제권) 신평2동은 산업단지·상가, 재래시장이 밀집되어 있어 그 종사자 중 상당수가 하단1동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하단1동의 주민들이 신평2동에 소재해 있는 여러 상업시설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 공동 경제권으로 볼 수 있음
- (동일 종교문화권) 하단1동에 있는 하단성당의 경우 신평2동까지 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타 종교의 경우에도 하단1동과 신평2동의 구분 없이 종교 활동을 영위함
- (동일 교통권) 신평2동에는 지하철 1호선 신평역이 있으며 이 역은 신평2동 주민보다 오히려 하단1동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정도로 교통권이 공유되고 있음
- (동일 교육문화권) 하단1동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등에는 신평2동 학생들도 함께 배정받아 학습권도 공유되고 있음

※ 사하구 행정구역



□ 결론

현행	제안	비고	증감
북구강서구갑 북구강서구을	북구갑 북구을 강서구	북구 분구 (인구상한) 북구와 강서구 분구	1
동래구	동래구갑 동래구을	분구	1
남구갑 남구을	남구갑 남구을	현행유지	0
사하구갑 사하구을	사하구갑 사하구을	행정동 조정	0
			2

부산시 선거구획정 관련 의견서

홍지수 | 기본소득당 부산시당 위원장

부산시 선거구획정 관련 의견서

홍지수 | 기본소득당 부산시당 위원장

1. 현 황

부산광역시의 현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총 18개이며, 이 중 인구범위 상한선 및 하한선을 초과·미달하거나 자치구 시군구 일부 분할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선거구는 총 3개 지역이다.

2. 고 찰

서구는 2013년 인구 12만 명 이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여 2023. 7. 기준 약 104,000명으로 10만 명 하한을 앞두고 있다. 서구는 대규모 재개발 및 특별한 인구 유입의 호재가 없고, 감천 등 산지가 많아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특별한 원인이 없는 한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2024~2025 이후 1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서구와 인접한 사하구 역시 2013년 기준 인구 35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2023. 7. 기준 300,400명으로 30만 명 이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사하구는 최근 당리동 및 괴정동 일대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장림, 신평공단 부근 신규 아파트단지 개발로 인구 하락세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영도구는 현재 10만 명의 인구를 유지 중이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인구 감소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영도구는 2013년 인구 약 135,000명에서 2023. 7. 기준 약 107,000명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산지가 많고 특별한 산업시설이 없어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지역 중 하나이며, 흰여울 문화마을 등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 인구는 특별히 증가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부산의 대표적인 구도심 중 하나인 중구는 인구가 4만 명(39,000여 명)이 채 되지 않는 초미니 지역이다. 상업시설이 많고 주거시설이 적어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다.

중구와 인접한 동구는 2013년부터 꾸준한 인구 감소를 보이다 최근 들어 신규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인구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 (2023. 7. 기준 약 88,000명)

한편 북구는 2013년 30만을 유지하다가 2015~16 소폭 증가하였으나 최근 28만 명 아래로 감소되었다. 강서구는 2013년 인구 7만을 넘어선 후 신도시의 꾸준한 개발로 현재 143,000명을 기록 중이다. 최근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기반 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약 7만 6천 명 규모의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3. 선거구획정을 위한 제안

1) 북강서 갑, 을 지역구의 조정 필요성

부산 북강서 지역구는 현재 북구 인구 약 27만, 강서구 인구 약 14만 명을 합쳐 40만이 넘어 북강서 갑, 을 두 선거구로 분리되어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이 중 북강서을은 인구 266,000명 수준으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북구와 강서구는 생활권역에서 차이가 나고, 지리적으로도 부산 서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매우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산업단지 등이 결합된 복합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두 지역구를 합쳐서 북강서 갑, 을로 묶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서구는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현재 강서구 인구만으로도 하한선인 약 135,000명을 넘어서고 있어 강서구의 선거구 분리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북구의 경우 인구 선거구 상한선 약 27만 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까지는 현행과 같이 북강서 갑, 을

두 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더라도 추후에는 강서구, 북구 두 개의 선거구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향후 북구의 인구가 증가할 경우 북구갑, 을 등으로 분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2) 서구 및 중구의 지역구 통합

서구는 인구 약 10만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고, 인근 중구와 맞닿아 있다. 중구 인구가 4만 명이 채 안되는 것을 감안할 때, 두 지역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단, 두 지역 모두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실정에서 향후 선거구 인구 하한선인 13만 5천 명 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3) 영도구 및 동구의 지역구 통합

동구는 인구가 2023. 07. 현재 약 86,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영도구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적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구 및 영도구를 한 권역으로 묶어 지역구를 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두 구를 합쳐도 인구가 약 18만~19만 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고 인구 감소를 고려해도 당분간 선거구 조정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부산광역시(지역구 : 18) 현재	
중구영도구선거구	중구 일원, 영도구 일원
서구동구선거구	서구 일원, 동구 일원
부산진구갑선거구	부전제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부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4동
부산진구을선거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가야제1동, 가야제2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동래구선거구	동래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동,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남구을선거구	대연제1동, 대연제3동,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부산광역시(지역구 : 18) 현재	
북구강서구갑선거구	북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2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북구강서구을선거구	북구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강서구 일원
해운대구갑선거구	우제1동, 우제2동, 우제3동, 중제1동, 중제2동,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해운대구을선거구	반여제1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사하구갑선거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사하구을선거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금정구선거구	금정구 일원
연제구선거구	연제구 일원
수영구선거구	수영구 일원
사상구선거구	사상구 일원
기장군선거구	기장군 일원

부산광역시(지역구 : 18) 변경안	
중구서구선거구	중구 일원, 서구 일원
동구영도구선거구	동구 일원, 영도구 일원
부산진구갑선거구	부전제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부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4동
부산진구을선거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가야제1동, 가야제2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동래구선거구	동래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동,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남구을선거구	대연제1동, 대연제3동,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북구선거구	북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2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강서구선거구	강서구 일원
해운대구갑선거구	우제1동, 우제2동, 우제3동, 중제1동, 중제2동,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부산광역시(지역구 : 18) 변경안	
해운대구울선거구	반여제1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사하구갑선거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체1동, 하단체2동
사하구을선거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금정구선거구	금정구 일원
연제구선거구	연제구 일원
수영구선거구	수영구 일원
사상구선거구	사상구 일원
기장군선거구	기장군 일원